

「우편법 시행규칙」 제61조제6항에 따른 「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, 취급우체국,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(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2-1호)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5일

전북지방우정청장

「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, 취급우체국,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」
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KTX 특송사업 종료에 따른 당일특급 우편서비스의 단계적 폐지방침에 의해 당일특급 취급 가능지역 조정(동일권역 내만 가능하고 전국 서비스 폐지)

2. 주요내용 : 당일특급 취급 가능지역 조정(붙임)

3. 시행일 : 2023. 1. 1.

4. 의견 제출

「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, 취급우체국,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」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 등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하는 곳 :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

○ 전 화 : 063-240-3624 (Fax : 050-5005-2102)

○ 이메일 : khmstj@korea.kr

○ 주 소 : 전북 전주시 서원로 99, 전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

라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(<http://www.koreapost.go.kr> 열린경영/공고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, 취급우체국,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」 개정(안)